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024 발의연월일: 2023. 3. 30.

발 의 자:전해철·김승남·맹성규

이종배 · 최인호 · 이병훈

이원욱 • 이정문 • 김성주

이용선 • 조오섭 • 오영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,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·이해와 공감대를 확산 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의 시책 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수소의 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수소의 날) ① 산업통
	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
	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
	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
	<u>지정·운영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수소의 날 지
	<u>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
	령령으로 정한다.